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 12 선고 2020가합1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可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 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변론 종결 2020. 11. 17.

판결 선고 2021.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20. 1. 1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 한다)는 토목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E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E의 누나이다.

나. C은 2018. 1. 5. 완도군으로부터 F공사(3지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도급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하도급주기로 하고,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액면금400,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C은 2018. 1.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74,222,000원, 공사기간2018. 1. 26.부터 2018. 5. 25.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완도군과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5. C에 '만약 원고의 공사 포기, 계약 해지, 기타 사유로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사유 발생일 및 계약 체결된 내역을 기준으로 시공된 수량에 의해 정산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 및이후의 채권보전 조치(전부명령 등)에 대해서는 이 확약서의 효력이 우선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와 C은 2018. 3. 2.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증서 2018년 제49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2018. 3. 30. 이 사건 확약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8년 제1465호로 인증을 받았다.

바. 완도군은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을 이유로 2019. 6. 5.부터 2020. 2. 3.까지 수회에 걸쳐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원고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 C과 완도군은 2020. 1. 21.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2020. 3. 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C은 2020. 2. 11. 원고에게 '원고의 불성실한 공사수행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원고와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자. C은 2020. 1. 13. 완도군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완도군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채권양도의 통지는 2020. 1. 14. 완도군에 도달하였다.

차. 원고는 2020. 1.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카단21호로 C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 24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완도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0. 1. 29.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카. C은 2020. 8.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카단247호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0. 12. 1. 이 사건 결정이 있기 전에 C의 완도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타. 한편, 원고는 2020. 2. 19. E와 C의 직원인 H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으나, 전남완도경찰서는 2020. 6.23.경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나윤민, 판사 김달하, 판사 신호승